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-209호

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안내

- 용어의 정의에서 “국제공인 인정마크”란 용어를 아래와 같이 신설
『ILAC-MRA 마크 사용협정에 따라 국제공인기관이 그들의 인정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.』

- 인정분야 및 인정범위에서 소분류를 삭제하고 중분류와 대문류로 다른 인정기구와 맞춰서 구분토록 개정함
- 또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도 시험방법, 시험항목, 시험품목으로 방법과 품목을 바꾸어 개정하여 표기 토록함.

- 인정신청 및 평가에서 신청 시험항목에서 시험분야에 대한 불확도 추정실적으로 개정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인기관 인정신청을 인정신청 및 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개정

- 기술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학력 및 경력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
과학기술계통의 고등학교졸업 후 8년을 고등학교졸업 후 8년으로 완화하여 개정

- 대표자의 서약서를 아래와 같이 추가함
본인이 심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또는 컨설팅에 종사하거나, 소속기관의 직원이 심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컨설팅에 종사한 적이 없다.